

【 6 】 휴회의견

제의년월일 : 1994. 11. 3.

제 의 자 : 의 장

주 문

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함.

제안이유

감사 특위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함.

【 7 】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○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 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음.

2. 감사 기간

1994년 12월 1일 ~ 12월 9일 (7일간)

3. 감사 대상기관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과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